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50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3
2. 적용기한 연장(나경원의원안, 강명구의원안)	8

I. 개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5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1. 24.
- (3) 회 부 일 : 2025. 11.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제60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의 결집효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음.

제61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이전(제60조) 및 법인본사이전(제61조)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 분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 (제60조)	법인본사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제61조)
요건	대상법인	대도시 안 공장에서 사업영위 법인 *사업기간 불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 *본사를 둔 기간 불문
	이전요건	대도시→대도시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1년(기존공장 취득) 또는 3년(신규공장 준공) 내 이전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3년 내 이전
	업종요건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이전비율 -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또한, 수도권에 공장 및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제63조) 및 본사(제63조의2)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분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	
요건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의 사업영위 기업(법인, 개인)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영위 법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업종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투자 및 고용	해당 없음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	
감면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본사 이전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 * 이전본사 근무인원/법인전체 근무인원	
세액감면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 3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 4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⁴⁾	10년 100% + 5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10년 100% + 5년 50%	7년 100% +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공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 포함)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사후관리		세액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2,052억원에서 2024년 79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본사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3,032억원에서 2024년 384억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부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0조)	0.1	1	2	1	1	1
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1조)	2	5	7	5	5	5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63조)	2,052 소득세 (253) 법인세 (1,799)	1,192 소득세 (264) 법인세 (928)	1,279 소득세 (249) 법인세 (1,029)	799 소득세 (195) 법인세 (604)	775 소득세 (141) 법인세 (634)	610 소득세 (16) 법인세 (594)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63조의2)	3,032	2,993	727	384	490	50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이전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0조	공장	대도시 → 대도시 밖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3조	공장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5년간 100% + 3년 50% ¹⁾ 7년간 100% + 4년 50% ²⁾ 10년간 100% + 5년 50% ³⁾
제63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1) 수도권 및 수도권 연접지역 낙후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2) 지방광역시 내 낙후지역으로 이전

3) 성장추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수도권·수도권 연접지역·지방광역시 제외)으로 이전

☐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의 본사	수도권 →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대도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②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¹⁾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²⁾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³⁾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2. 적용기한 연장(나경원의원안, 강명구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현행과 같음) ○ 감면대상: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발의 당시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 적용기한: <u>2028. 12. 31.</u> * 발의 당시 2025. 12. 31.			○ 적용기한: <u>2028. 12. 31.</u> (나경원의원안) <u>2030. 12. 31.</u> (강명구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 나경원의원안 2025. 11. 21. 발의(의안번호 14479), 강명구의원안 2025. 11. 24. 발의(의안번호 14509)

□ 개정안은 2028년 말 일몰 예정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2023년 기준 52.3%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전국	51,836	516	51,745	515	51,628	514	51,713	515	51,751	515
수도권	26,021	2,193	26,054	2,195	26,053	2,195	26,190	2,206	26,304	2,215

자료: 국가데이터처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명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993	1,046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1.3%	52.1%	52.2%	52.9%	52.8%	52.8%	52.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3년 지역소득(잠정), 2024. 12.

□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임.

첫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 52.06%(사업체 수 기준), 64.67%(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⁴⁾, 2,764개 상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1,103개로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며 경기도(807개)와 인천광역시(96개) 등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약 73%의 상장사가 집중되어 있음.

기업 이전 조세특례 제도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도시 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각종 특구 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동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기업들의 높은 사전 인지도(본사 78.0%, 공장 65.4%)하에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이전 결정에 기여(본사 46.4%, 공장 51.5%)한 것으로 분석되었고⁵⁾, 기업성과(투자, 고용

4) 국가데이터처, 'KOSIS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5)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및 생산성 증대)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사 이전 특례는 기업의 투자 개선, 공장 이전 특례는 생산과 투자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⁶⁾

또한, 조세감면 혜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고용이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세특례가 전체적으로 지역 고용을 증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⁷⁾

□ 다만,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음.

따라서 나경원의원안의 경우 입법취지가 달성되었고, 강명구의원안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정책효과 등에 대한 조세특례 평가를 거친 이후에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6)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7)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